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9. 10. 이수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4. 9. 1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상정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9.)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 의원)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 개정안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 진료기록전송시스템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전체 39,708
개소 중 8,961개소로 진료기록전송시스템 참여율이 22.6%에 불과
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진료기록전송시스템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을 이용한 전송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 규정시
팩스,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송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우편 등 비전자적 방법을 통한
송부도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의원)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